

-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591
------------	------

2020년 6월 1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0년 6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가. 제안이유

-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운영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개화역~신논현역을 운영하는 기존 9호선 구간을 신논현역~종합운동장(2단계)~보훈병원(3단계)까지 연장 운영하는 사무로
- 2014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9호선 2·3단계 재위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범위),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 필요성
 - 철도운영은 고도의 전문성과 운영의 노하우가 필요함에 따라 도시 철도 운영 경험이 있는 철도운영자에게 운영을 맡김으로써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강화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을 통해 운영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위탁사무 내용(도시철도법 제3조 제4호)
 -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구간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운송
 -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임대사업, 옥외광고업 등 도시철도부대사업
- 위탁기간 : 3년('20.9.1.~ '23.8.31.)
- ※ 그간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14. 9. 5.~'17.11.28. (3년, 서울메트로)
- 2차 : '17.11.29.~'20. 8.31. (3년, 서울교통공사)

○ 수탁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위탁비용 : 결산자료 비교분석하여 산출

- 지난 3년간 결산자료 및 동일업종 운영기관별 원가산출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산출 예정 ※ 지난 민간위탁 비용 : 839억원
- 시 소요예산은 위탁비용과 운영수입간 차액을 지원

※ 소요예산 = 운영비용(위탁수수료 포함) - 실제수입
 ▶ 사후 정산으로 운영 이익 발생 시 환수

※ '20년 민간위탁금 예산 : 약 180억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20.5월 수시심의 신청 중이며 5월중 결과 통보 예정

○ 기대효과

- 전문기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및 안전·서비스 품질 향상
- 운영사 간 경쟁 도입으로 혁신적 운영방안 마련 유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항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법」 제42조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종합성과평가보고서 제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사무로, 성과보고서를 종합성과평가보고서로 같음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동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9호선 2·3단계 구간의 계약이 '20년 8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서울시가 동일구간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될 경우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1)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운영현황

구 분	1단계 구간	2·3 단계 구간
구 간	개화역~신논현역	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보훈병원
구 모	27km(25개역)	13km(13개역)
열차편성수	36편성	9편성
계약기간	'09. 7~'38.11	'17.11~'20. 8
운 영 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교통공사 직영 (9호선 운영부문(CIC))
사업형태	민간투자사업(BTO)	재정사업(민간위탁)

나. 검토의견

■ 9호선 운영 현황

- 현재 9호선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된 1단계와 재정사업인 2·3 단계 구간으로 구분·운영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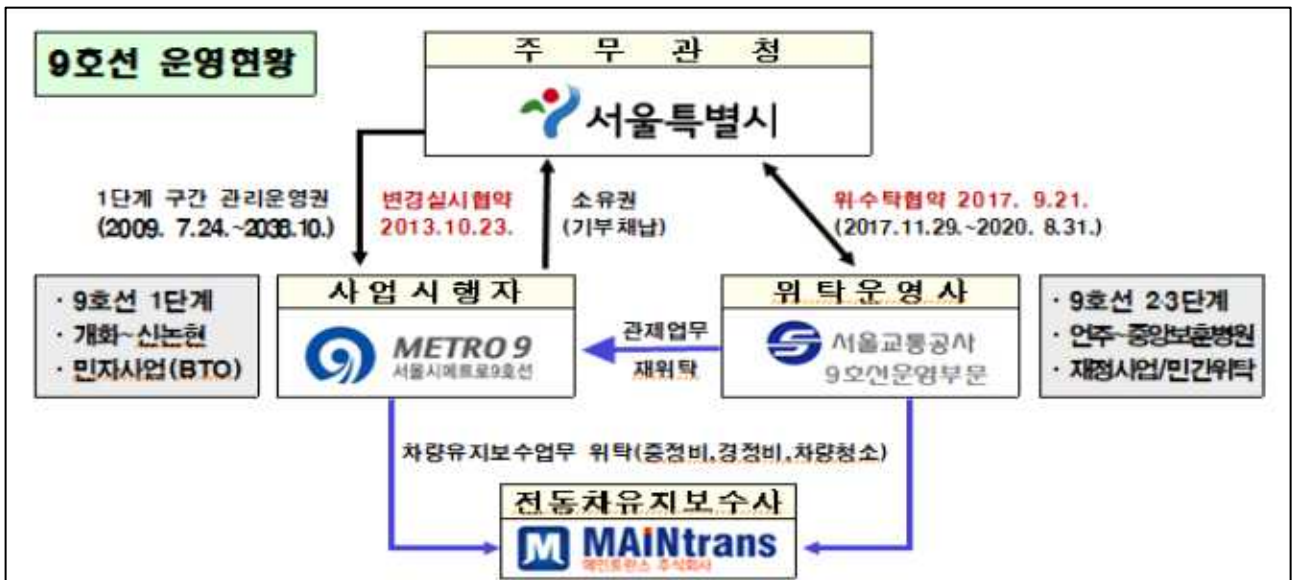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단계는 '09년 개통 후 '19년 6월 30일까지는 프랑스 기업 트랑스 데브의 자회사인 '서울9호선운영(주)'이 위탁 운영하였으나 '19년 7월 1일부터는 기존 '서울9호선운영(주)'과의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운영하고 있으며

2·3단계의 경우 '15년 4월 3일부터 '18년 11월 26일까지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이 운영하였고 '18년 11월 27일부터 서울교통공사가 사내독립기업 형태인 '9호선 운영부문 (CIC)²⁾'형태로 직영 운영하고 있으나 관제업무는 1단계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차량유지보수 업무는 메인트랜스(주)에 재위탁 하고 있음

※ 참고 : 9호선 구간별 운영체계 비교



2) 사내독립기업(CIC, Company In Company)

- 투자와 신규사업 개발에 필요한 기획 기능
- 회계·자금·구매 등 재무 기능
- 구성원에 대한 평가·인사 기능
- 법무와 총무 기능

■ 9호선 2·3단계 위탁관리 추진 경위 [별첨 참조]

- 9호선 2·3단계는 언주역부터 종합운동장(2단계)을 거쳐 중앙보훈병원(3단계)에 이르는 총 13개역, 13km 구간을 말하며,

동 구간의 여객 운송과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 운행관리는 물론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임대사업, 옥외광고업 등 도시철도 부대사업에 대한 업무를 서울교통공사(9호선 운영부문)가 위탁관리하고 있음

- 서울시는 지난 2014년 2단계 개통에 따른 9호선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³⁾을 수행한 결과, 공사 직영 보다 민간위탁방식이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결론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와 관리운영협약을 체결⁴⁾하였고, 이후 서울메트로는 체계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자회사(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를 설립⁵⁾하여 협약 업무를 재위탁⁶⁾한 바 있음

- 하지만, 2차례에 걸친 민간위탁에 이은 자회사 재위탁 과정이 반복되면서 민간위탁 조례⁷⁾ 위반 논란과 함께 자회사 근로자의 고용

3) 서울지하철9호선 2·3단계 운영방안

- 연구기간 : 2014.01.20 ~ 2014.05.19. (4개월) - 용역기관 : 서울연구원

-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9호선 1단계 운영사의 참여가 필요하며, 양공사 직영시에도 택일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 필요

4) '14. 8.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서울메트로) 및 협상 및 관리운영협약 체결(서울특별시↔서울메트로)

5) '15. 4. :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설립

6) '15. 8. : 재위·수탁 협약체결(서울메트로↔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업무는 수탁기관(서울메트로)이 직접수행하지 않고 자회사(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를 설립하여 전체업무를 재위탁함으로써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저촉된다는 지적(조직담당관)

불안 및 개선책 마련에 대한 여론이 커짐에 따라

'18년 11월 기존 자회사에서 위탁운영하던 9호선 2·3단계 관리사업을 서울교통공사 직영으로 전환하여 사내독립기업(CIC) 방식의 '9호선 운영부문'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

※ 참고 :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경위

	기간	입찰참여기관	우선협상대상자	비고
1차	(2단계) 14. 9. 5. ~ 17. 8. 31. (3단계) 15. 7. 1. ~ 17. 8. 31.	(9호선운영(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자회사(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설립 후 재위탁
2차	(2단계) 17. 11. 29. ~ 20. 8. 31. (3단계) 18. 6. 1. ~ 20. 8. 31.	(9호선운영(주),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재위탁

■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검토의견

1) 민간위탁 대상 여부 관련

- 「도시철도법」 8)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

민간위탁 조례⁹⁾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사업¹⁰⁾으로 건설된 9호선 2·3단계 운영업무는 민간위탁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¹¹⁾

- 자회사 또한 역사관리를 제외한 핵심업무(관제, 차량정비, 신호운영 등)를 1단계 운영사에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

8) 「도시철도법」 제15조(건설 및 운영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10) 전체 사업비 1조 7,278억원(시비 1조 367억원, 국비 6,911억원)

※ 참고 :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사무

1. 9호선 2·3단계구간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운송
2.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3.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임대사업, 옥외광고업 등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부대사업

2) 민간위탁사업 재계약·재위탁 여부 및 동의안 제출 근거 관련

-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재위탁”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고 “재계약”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정의되어¹²⁾ 있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¹³⁾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음

- 동 동의안은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이 시작된지 6년이 경과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절차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동 사업이 민간위탁 대상

11) 참고로 9호선 1단계(전체 사업비 3조 5,688억원(재정 2조 4,137억원, 민간자본 1조 1,551억원)) 구간은 서울메트로9호선(주)이 건설하고 서울9호선운영(주)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가 별도의 운영사를 선정한 것임

1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13)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임을 감안할 때 재위탁, 재계약 모두 검토 가능한 것으로 보임

■ 민간위탁(재위탁 등) 추진시 주요쟁점

1) 운영사 변경에 따른 문제

-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은 여객운송, 해당 철도시설 관리 및 개발을 책임지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운영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인 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임
-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운영 중이지만 재위탁의 경우 입찰결과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가 아닌 다른 운영사로 변경될 경우¹⁴⁾ 서울교통공사는 협약¹⁵⁾에 따라 현재 관리운영 인력¹⁶⁾은 기존 서울교통공사 내 다른 부서로 흡수되고, 새롭게 선정된 운영사는 9호선 2·3단계 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하고 관리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인력 교체가 발생할 경우 9호선 2·3단계 운영 및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고, 서울교통공사는 신규 채용인력 감소로 인력적체와 내부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서울시는 민간위탁자가 변경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 운영의 미숙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14) '17년 공모 참가기준인 “10년간 서울시 소유·출자 도시철도 운영경험이 2년 이상인 법인”

- 현재 입찰 가능한 운영사 :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9호선 1단계), 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 3곳

15) 노사합의서(2019.10.9.) 부대약정서

2. '20년 8월 31일 재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9호선운영부문 직원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신분임을 확인한다.

16) 자회사 직원 고충승계 251명(※ 정원 255명 중 사장 1, 공사과견자 3 제외)

2) '9호선 운영부문(CIC)'와 서울교통공사간 보수규정 차이

- '9호선 운영부문(CIC)'은 당초 서울메트로의 자회사인 서울메트로 9호선운영(주)의 운영규정을 따르고 사내독립기업 특성상 취업규칙·인사규정·보수규정 등을 서울교통공사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년 10월 9호선 2·3단계 노사는 “서울교통공사와 동일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¹⁷⁾한 바 있으나, 여전히 취업규칙, 임금체계 등의 차이로 갈등은 남아 있는 실정임
- 현재 서울교통공사 임금은 '호봉제'를 따르는 반면 '9호선 운영부문'은 '연봉제'를 따르고 있고, 이마저도 직급간 금액차이가 있어 '9호선 운영부문'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18년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9호선 운영부문의 임금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울교통공사 수준으로 하기¹⁸⁾로 되어 있으나, 9호선 2단계 노조에서 임금인상분을 요구한 자료¹⁹⁾에 따르면, '18년 기준으로 서울교통공사와 9호선2단계 임금은 평균 10백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조측에서는 연봉제로 인한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호봉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17) 노사합의서(2019.10.9.) 부대약정서

1. 서울교통공사와 동일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적용방안을 노사 공동협의체(9호선 운영부문 및 서울교통공사)를 구성하여 합의로 마련하고 '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8) 2018년 노사 임금협약서(2018.8.26.)

○ 2019년 이후 임금수준은 협약금액 범위 내에서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울교통공사 수준으로 개선한다.

19) 케도 민자사업의 문제점 분석과 공영화 전략 모색 연구(사회공공연구원 2020.3)

※ 참고 : 서울교통공사와 동일수준 임금 및 동일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인상률 산출근거 (2018년 기준)

9호선 2단계 (통상일근 평균급수 기준)		서울교통공사 (통상일근 대표호봉 기준)		차이
3급	56,511,290	3급	70,997,554	14,486,264
4급	46,711,390	4급	61,603,656	14,892,266
5급	37,236,756	5급	58,358,592	21,121,836
6급	32,570,150	6급	44,575,128	12,004,978
		7급	34,445,952	34,445,952
합계	173,029,586	합계	269,980,882	96,951,296
평균	43,257,396	평균	53,996,176	10,738,780

- 따라서, '9호선 운영부문'의 임금 및 보수규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서울교통공사가 또다시 재위탁하게 될 경우 노사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결국, 임금수준 및 인사규정에 대한 갈등은 9호선 2·3단계 관리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찬반논란의 중심이 될 우려가 있는 바, 서울교통공사는 재위탁 여부에 앞서 임금 및 보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 이외 9호선 2·3단계 운영방안 검토(대행사업, 현물출자)

- 서울시는 '18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서를 통해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20년 8월 이후에는 9호선 2·3단계 구간의 재위탁 이외에도 현물출자와 대행사업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²⁰⁾

20)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승미 의원 20.지하철 9호선 운행관련)

(4) 지하철 9호선 2.3단계 직영에 따른 서울시의 계획

- 2·3단계 구간은 재정사업 구간으로 '18.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직영운영 체제로 전환하여 '20.8월까지 운영할 예정임
 - 협약금액 범위 내에서 근속기간을 고려해 근로조건 수준을 서울교통공사 수준으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20.8월 이후에는 2·3단계 구간의 재위탁, 현물출자, 대행사업 등을 검토하

1) 대행 사업

- 대행사업이란 관련 법²¹⁾에 따라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되 그의 명의로 책임은 원래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²²⁾으로

서울시는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업 중 민간 경쟁자가 없고 도시 인프라 관리 등 도시공공성을 추구하는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아닌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침²³⁾을 세워,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지하도상가 관리 등 민간위탁하고 있는 23개 사무를 대행사업으로 전환한 바 있음

- 따라서, 9호선 2·3단계 관리운영이 도시 인프라 중 하나인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사업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 방침에 따라 대행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동 사업의 관리운영 사업에 대한 민간 경쟁자가 존재하고 신규·해제시를 제외하고 의회의 동의 절차가 없이 서울교통공사의 장기운영이 계속될 경우의 방만경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고 안정적인 운영 및 근로자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임

- 21)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22) “법령집안·심사기준” 8.행정업무의 대행(2017.12)

23) 민간위탁 혁신계획(조직담당관-8252, 2016.6.30.) 「민간위탁과 대행의 구분으로 운영 효율화」

- 시설공단 사무를 성격별로 위탁과 대행으로 재분류하기 위해, 서울시 주관부서 의견수렴 결과, 23개 사무 전체를 대행사업으로 전환 결정
 - '17.1월 이후 신규사무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사업추진방식 결정(사업부서)
 - 위 탁 : 민간 참여로 경쟁이 가능한 사무, 경제성·효율성 추구 사무
 - 대 행 : 민간 경쟁자가 없거나 보안, 도시 인프라 관리 등 공공성 추구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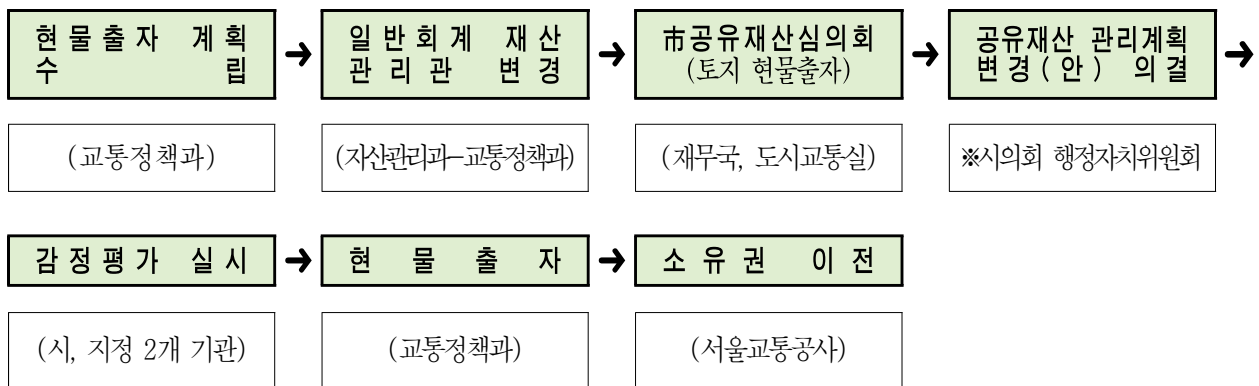
※ 참고 : 민간위탁, 대행사업 특징 비교

구분	민간위탁	대행
개념	• 수탁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책임을 지고 사무를 수행함	• 위탁기관의 권한이 법적으로 수탁기관으로 이전되지 않음
수탁자	• 법인, 단체, 개인	• 법인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
권한책임	• 이전	• 이전되지 않음
의회동의	• 시의회 동의(보고) (신규, 재위탁·재계약시)	• 시의회 의결 (신규·해지시)

2) 현물 출자

- 현물출자는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상품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을 출자하는 것을 말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공기업법²⁴⁾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심의 및 시의회 의결, 감정평가 실시 등에 따라 약 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참고 : 진행절차 : 약 5개월 소요 (※ 사당역 노외주차장 현물출자 참고)



- 서울시의회 또한 지난 '14년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구간 운영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민간위탁 추진 이전에 양공사 출자방식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²⁵⁾한 바 있음

- 현물출자를 통해 9호선 2·3단계 구간의 소유 및 운영권을 서울교통공사가 가질 경우 9호선 1단계를 제외한 1~9호선 구간 전체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지고 현재 재위탁을 통한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물출자를 할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비용(인건비 등)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운영비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비해 증가될 수 있고 서울교통공사 소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제업무는 현재와 같이 1단계 운영사에 위탁해야 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노선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은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9호선의 일부 구간으로 하루평균 132천명²⁶⁾의 이용객이 움직이는 중요한 대중교통 노선으로 당초 서울메트로 자회사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18년부터 현재까지 사내독립기업(CIC) 형태로 서울교통공사가 직영 운영 중임

따라서, 동 동의안을 통해 '14년부터 운영 중인 9호선 2·3단계 구간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것은 지하철 9호선 관리의 전문성과 운영의 지속성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동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진행되어 운영사가 변경될 경우를

25)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구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2014.4, 제252회 임시회)

26) 9호선 전구간 1일 560천명(295회 정례회 업무보고서)

대비한 대책 마련은 물론, 민간위탁 외 시민안전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행사업 및 현물출자와 같은 다른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9호선 근무인력의 고용불안과 임금체계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간 대화를 통해 고용승계 및 공사 직영 등의 성과는 이루어 냈지만, 아직 취업,인사,보수 부분에서 기존 서울교통공사와의 차이로 인한 불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²⁷⁾
- 따라서, 9호선 2·3단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위탁이 진행될 경우 또다시 3년 뒤 계약만료 시점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해결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고,

아울러, 단기적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38년 이후 9호선 1단계 구간 수탁 계약만료에 따른 통합운영체계 마련 등 장기적 개선안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27) 노사합의서(2019.10.9.) 부대약정서

1. 서울교통공사와 동일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적용방안을 노사 공동협의체(9호선 운영부문 및 서울교통공사)를 구성하여 합의로 마련하고 '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추진경위

- '08. 5 : 2단계 착공 ('09.12 : 3단계 착공)
- '14. 1~5 : 서울연구원 「9호선 2·3단계 운영방안」 연구용역 시행
 - 선정의 공정성,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사직영 보다는 공개경쟁을 통한 민간 위탁방식 타당
- '14. 4. :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 가결
- '14. 8.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서울메트로) 및 협상 및 관리운영협약 체결
(서울특별시↔서울메트로)
 - 협약기간 : (2단계)'14. 9. 5.~'17. 8. 31. / (3단계)'15. 7. 1.~'17. 8. 31.
 - 사업비 : 558억원(VAT 별도, 운영수수료 3% 포함)
- '15. 3 : 9호선 2단계 개통('15.3.8)
- '15. 3 : 자회사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설립 동의안 서울시의회 가결
- '15. 4 :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설립
- '15. 8 : 재위·수탁 협약체결(서울메트로↔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 '17. 9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및 관리운영협약 체결
(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
 - 협약기간 : (2단계)'17. 11. 29.~'20. 8. 31. / (3단계)'18. 6. 1.~'20. 8. 31.
 - 사업비 : 839억원(VAT 별도)
 - 내 용 : 이 협약 체결 전 고용된 근로자 우선 고용
- '17. 11 : 재위·수탁 협약체결(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 협약기간 : '17. 11. 29. ~ '18. 11. 27. / 12개월
 - 사업비 : 265억원(VAT 별도)
 - 내 용 : 교통공사가 직접 운영 시 교통공사는 9호선(주) 소속 근로자 고용승계
※ 1~4호선, 5~8호선 통합 후속처리 등의 사유로 자회사 1년간 위탁
- 공사 직영 이사회 의결('18.9.7)
 - 자회사 직원 고용승계, 현 보수 및 근로조건 보장(CIC) 등
- 자회사 9호선운영(주) 노사합의('18. 8. 26.)
 - 내 용 : 협약금액(839억원) 범위내 운영, 사내 독립기업(CIC)형태 운영, 자회사 직원 고용승계 등
- '18. 11. 28. : 서울교통공사 직영운영 전환,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청산
- '18. 12 : 9호선 3단계 개통('18.12.1)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동의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591
----------	------

제출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운영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개화역~신논현역을 운영하는 기존 9호선 구간을 신논현역~종합운동장(2단계)~보훈병원(3단계)까지 연장 운영하는 사무로
- 2014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9호선 2·3단계 재위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범위),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 필요성
 - 철도운영은 고도의 전문성과 운행의 노하우가 필요함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 경험이 있는 철도운영자에게 운영을 맡김으로써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강화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을 통해 운영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도시철도법 제3조 제4호)

-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구간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운송
-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임대사업, 옥외광고업 등 도시철도부대사업

라. 위탁기간 : 3년('20.9.1.~ '23.8.31.)

※ 그간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14. 9. 5.~'17.11.28. (3년, 서울메트로)
- 2차 : '17.11.29.~'20. 8.31. (3년, 서울교통공사)

마. 수탁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위탁비용 : 결산자료 비교분석하여 산출

- 지난 3년간 결산자료 및 동일업종 운영기관별 원가산출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산출 예정 ※ 지난 민간위탁 비용 : 893억원
- 시 소요예산은 위탁비용과 운영수입간 차액을 지원

※ 소요예산 = 운영비용(위탁수수료 포함) - 실제수입

▶ 사후 정산으로 운영 이익 발생 시 환수

※ '20년 민간위탁금 예산 : 약 180억원

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20.5월 수시심의 신청 중이며 5월중 결과 통보 예정

아. 기대효과

- 전문기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및 안전·서비스 품질 향상
- 운영사 간 경쟁 도입으로 혁신적 운영방안 마련 유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항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법」 제42조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종합성과평가보고서 제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사무로, 성과보고서를 종합성과평가보고서로 같음

※ 작성자 : 도시철도과 민자철도운영팀 한호정(☎ 2133-4357)